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34
----------	------

2020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장인홍 의원 외 21명
- 나. 제안일 : 2020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20년 10월 26일
- 라. 상정일 :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12월 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인홍 의원)

가. 제안이유

- 교육경비 보조는 서울소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현장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임.
-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변동이 크고,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전출률을 안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5이상으로 함(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입법예고(2020.10.29. ~ 11.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서울시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가 변함에 따라 안정적인 보조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해당연도의 본예산 세입 중 「지방세 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를 '10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0분의 6이내</u> 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0분의 5이상</u> 의 금액으로 한다.

-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과 유치원생, 각급 학교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교육여건 개선사업(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을 보조할 수 있는 재원이며,
 - 시장이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 현행 교육경비보조금은 본 조례에 따라 보통세(「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강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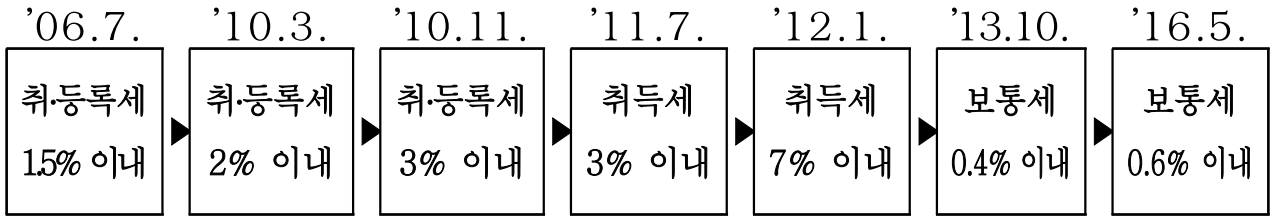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교육경비보조금은 ‘취·등록세의 1.5% 이내’로 제정(2006년 7월)되었고, 6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 ‘보통세의 0.6% 이내’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점증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은 보통세의 0.24%에 해당하는 352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입학준비금 121억원 별도 편성)

〈 교육경비보조금의 기준 변경 내역 〉



〈 최근 10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전출 현황 〉

(단위:억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안)
전출규모	638	557	580	418	405	417	567	283	533	673	474
전출비율	3.4%	4.7%	7.4%	0.38%	0.4%	0.4%	0.49%	0.22%	0.4%	0.46%	0.33%
조례기준	취·등록세 3% 이내		취득세 7% 이내	보통세의 0.4% 이내			보통세의 0.6% 이내				-
연평균액	591			413			471				-

- 입학준비금을 포함할 경우 2021년 예산(안) 기준 473억 7천 6백만원(보통세의 0.33%)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며,
-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가 '1000의 5 이상'으로 조정될 경우 2021년 예산(안)(473억 7천 6백만원) 대비 247억 3천 2백만원 증액(52.2%)한 721억 8백만원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율별 금액 내역 〉

(단위:천원)

편성 기준액	비율	산출금액	비고
14,421,707,091	0.24%	35,253,090	일반·특별교육경비 편성액
	0.30%	43,265,121	
	0.33%	47,376,360	2021년도 편성안 (일반+특별+입학준비금)
	0.40%	57,686,828	
	0.45%	64,897,682	
	0.50%	72,108,535	개정안의 최소 금액
	0.55%	79,319,389	
	0.60%	86,530,243	현행 편성가능 한도

-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중앙정부, 자치단체)이 96.1%(9조 3,631억원)이고, 자체수입은 1.0%(982억원) 수준이며,
 - 세출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 학교운영비 등)는 76%(7조 4,108억원)이며, 순수 교육사업비는 6.4%(6,391억원) 수준으로,
 -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자립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부족한 교육재정은 필요한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2021년도 입학지원금(121억원)을 제외한 교육경비보조금은 353억원으로 보통세의 0.24%에 불과하며, 전년대비 47.6% 감액한 수준으로 일부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축소·중단될 것으로 보여짐.

〈 2021년도 “일반·특별교육경비(교육경비 보조)” 예산편성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증감액	최종예산 대비 증감률
	본예산	최종예산			
계	67,299,072	67,299,072	35,253,090	△32,045,982	△47.6%
비법정전출금	67,299,072	67,299,072	35,253,090	△32,045,982	△47.6%

- 평생교육국은 직전년도인 2020년에 교육경비보조금 673억원 외에도, 무상급식 1,750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458억원 등 총 2,682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평생교육국의 교육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억원)

구 분	2021년(안)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계	36,714	36,300	32,729	31,910	36,207
법정전출금	34,032	33,186	30,206	29,784	33,939
비법정전출금 (교육경비보조)	474	673	533	283	600
무상급식	2,682	1,750	1,878	1,360	1,295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58	563	511	483	373
학교시설 개선지원	-	70	53	22	-
꾸미고꿈꾸는 학교화장실	73	104	104	100	99
초등학교 스쿨버스	38	43	37	36	29
학교보안관 운영등 지원	348	343	318	286	243
서울까치서당운영	-	3	-	1	3
학교내 컴퓨터 문화예술 플랫폼	-	1	-	-	-
학교개방 우수학교 인센티브	-	-	-	30	-
돌봄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	-	-	8	-

- 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을 현행 ‘보통세의 1000분의 6 이내’에서 ‘10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최저 한계선 또는 최소 예산편성 금액을 확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여부와 규모는 시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지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한편, 교육청의 재원부족이 비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가가 각 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 교부체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법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각 시·도가 교육청으로 진출할 금액(교육비특별회계)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

- 서울특별시 : 특별시세 총액의 100분의 10
- 광역시 및 경기도 :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 :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000분의 36

- 교육청이 필요한 금액(기준재정수요액)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진출한 재원(기준재정수입액)을 제한 뒤 부족한 금액만을 국가가 교부(보통교부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우 타 광역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교육청에 교부하고, 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적게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현행 배분공식을 학생 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서울시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준재정수요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 ① 교직원인건비, ② 학교운영비, ③ 교육행정비, ④ 교육복지 지원비, ⑤ 교육기관 시설비, ⑥ 유아교육비, ⑦ 방과 후 학교 사업비, ⑧ 재정결함 보전(지방교육채 등) 등의 총합

※ 기준재정수입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5조)

- ① 지방세(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교육비특별회계), ②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③ 학교용지부담금의 총합

○ 종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역별 배분과 서울시의 교육재정부담의 규모가 중앙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현행 구조로 인해 교육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충분성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 이러한 상황에 더해 경기악화, 감염병 지속 등으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며, 교육청도 같은 이유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은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바,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정적 교육사업 추진과 서울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경비 기준 금액의 규모와 변경된 기준의 시행시기에 대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로 함(안 제5조제1항).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10.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934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1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을 감안하여 교육 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통세의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로 함(안 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1000분의 5이상”을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0분의 6이내</u>의 금액으로 한다.</p>	<p>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0분의 5이상</u>의 금액으로 한다.</p>	<p>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u>의 금액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00분의 6이내”를 “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p> <p>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0분의 6이내</u>의 금액으로 한다.</p>	<p>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p> <p>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u>1000분의 4이상 1000분의 6이내</u>의 금액으로 한다.</p>